



집주인이 성희롱을 한다면

집에서 평안은

# ~~집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임차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부도덕한 집주인은 임차료를 안 받거나 깎아 주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성적 호의를 제공할 것을 강요합니다. 주택 상황에서의 성희롱은 공정주택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유지보수 담당자가 성적인 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상황을 끝내십시오.

[hud.gov/fairhousing/sexualharassment](https://www.hud.gov/fairhousing/sexualharassment) 또는

전화 **1-800-669-9777** 을 이용해 주십시오

연방 중계 서비스 **1-800-877-8339**

안전이 우려될 경우 911로 신고해 주십시오.



**공정한 주택 거래: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미주택도시개발부와 전국공정주택연합이 함께 하는 공익 메시지입니다.

연방 공정주택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가족 조건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